

평창군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 5.

제 출 자 : 평창군수(지역도시과장)

1. 제안이유

가. 총주담 상류지역인 평창읍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1차처리(정화조)된 상태로 방류되고 있어 방류수역과 그 지류의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, 향후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하수발생량 증가로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수역의 수질환경보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평창읍 종부리 967번지 일원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6항 사목에서 정하고 있는 "기반시설" 중 환경기초시설인 평창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평창군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안에 대하여 동법 제2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

2. 주요골자

가. 군계획시설 (환경기초시설) 결정

-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: 6,120㎡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검토 : 2006. 12. 5 ~ 2007. 1. 3.(붙임 "참조")

나. 주민설명회 : 2003. 3. 20.

-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설명

다. 주민공람 : 2007. 3. 30 ~ 2007. 4. 12

- 제출의견 없음

4. 사업추진경위

추진일정	추진내용
'02.11.6	·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수립
'03.3.10	· 충주댐 상류 하수도사업 협약체결(환경부, 지자체, 환경관리공단)
'03.6.3~'04.6.23	·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(환경관리공단)
'04.2.23~ 4.30	· 감사원 SOC 민간투자제도 운영실태』감사
'04.9.24	· 감사원 처분지시(감사원→환경부)
'04.11~'04.12	· 사업방식 변경(민자사업→재정사업)관련 자치단체 협의
'05.1.6	· 재정/민자사업 비교분석기준 확정 및 시달(지자체, 공단)
'05.1.27	· 환경부 관계기관 합동회의(28개 시군포함)
'05.3.10	· 사업방식 변경계획 정부방침 확정(환경관리공단)
'05.3.11	· 대형공사 입찰방법 집행심의
'05.5.30	· 변경협약체결
'05.3.8~04.16	· 표준입찰안내서 작성용역수행
'05.5.31	· 턴키공사 발주공고
'05.6.8	· 충주댐 1권역 현장설명회
'05.11.15	· 턴키공사 입찰
'05.12.7	· 턴키공사 심의
'05.12.29	· 실시설계 적격업체 통보
'06.9.22	· 공사계약 및 착공계 제출

평창군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따른 의회익권 청취안

1.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안

가. 환경기초시설

- 하수도(하수종말처리장)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1	하수도 (평창하수종말처리장)	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967번지 일원	-	증) 6,120	6,120		농림 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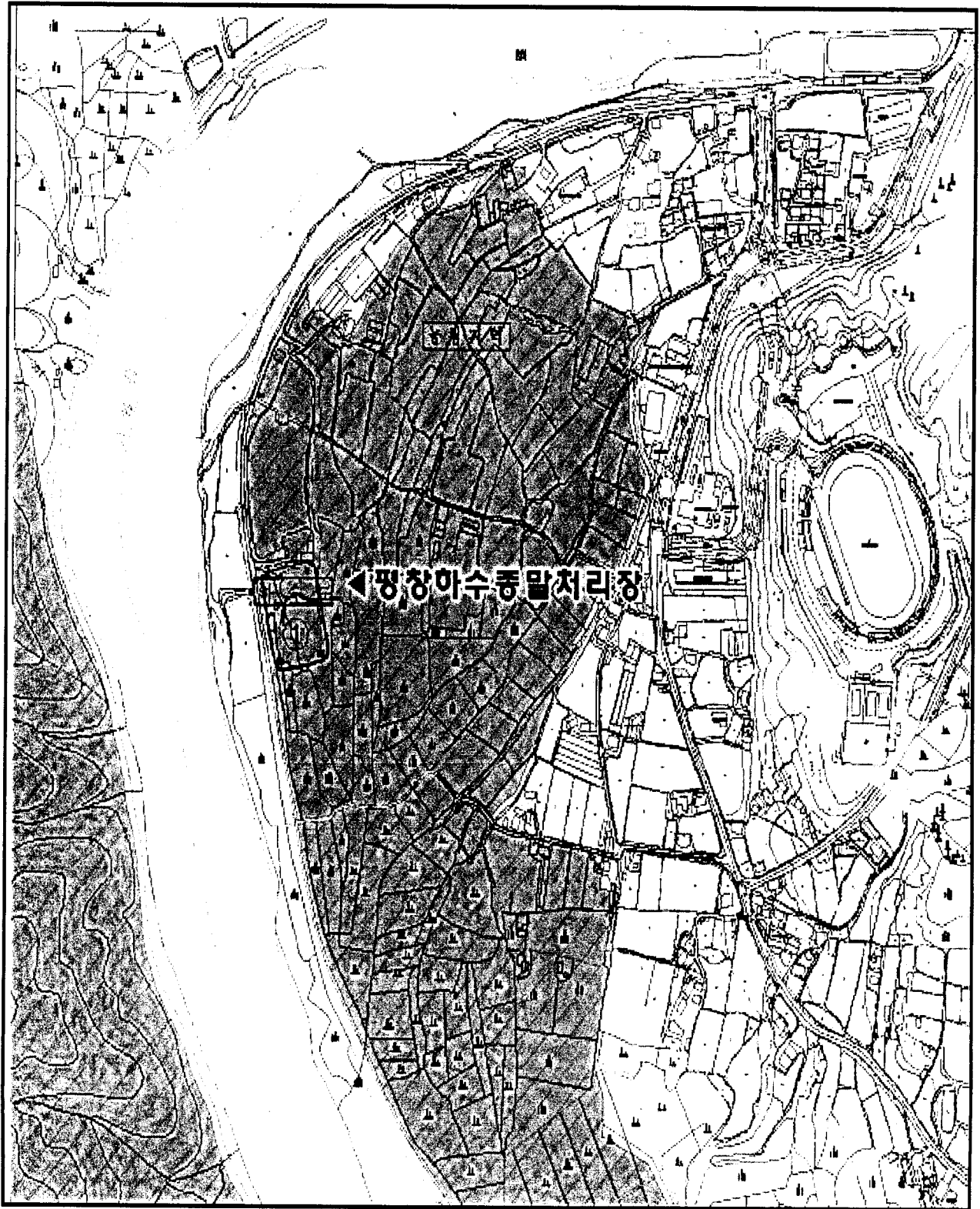
- 하수종말처리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결정(변경)내용	결정(변경)사유
1	하수도 (평창하수종말처리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· 위치 :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967번지 일원 · 면적 : 6,120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평창하수종말처리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고도처리공법 도입 등으로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방류하천 및 총주담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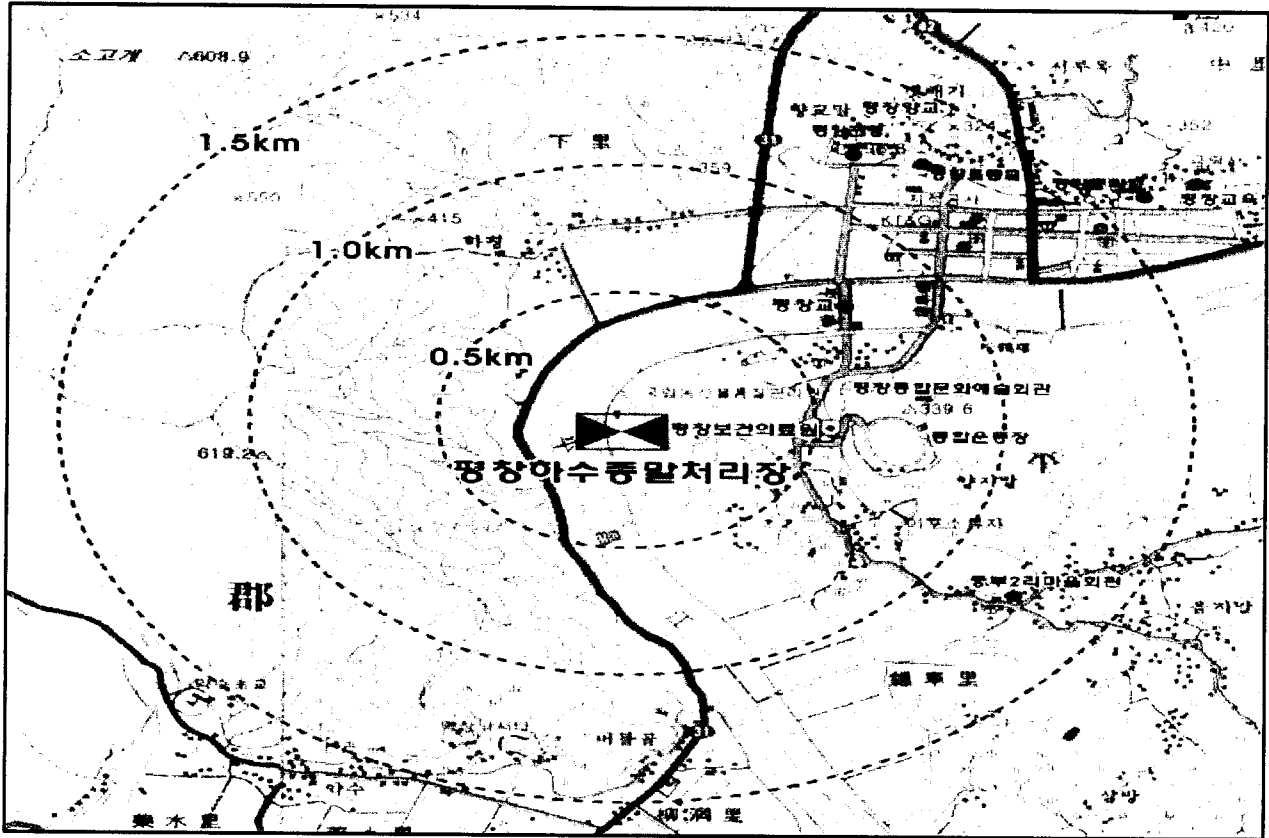
· 세부시설 총괄조사

구 분	시 설 물	조성 면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건 축 시 설	건 물	1,103	18.02	-
	도 로	957	15.64	-
녹 지 시 설	조 경 녹 지	823	13.44	-
	사 면 녹 지	2,363	38.61	-
기 타 시 설	기 타 공 지	874	14.29	-
합 계		6,120	100.00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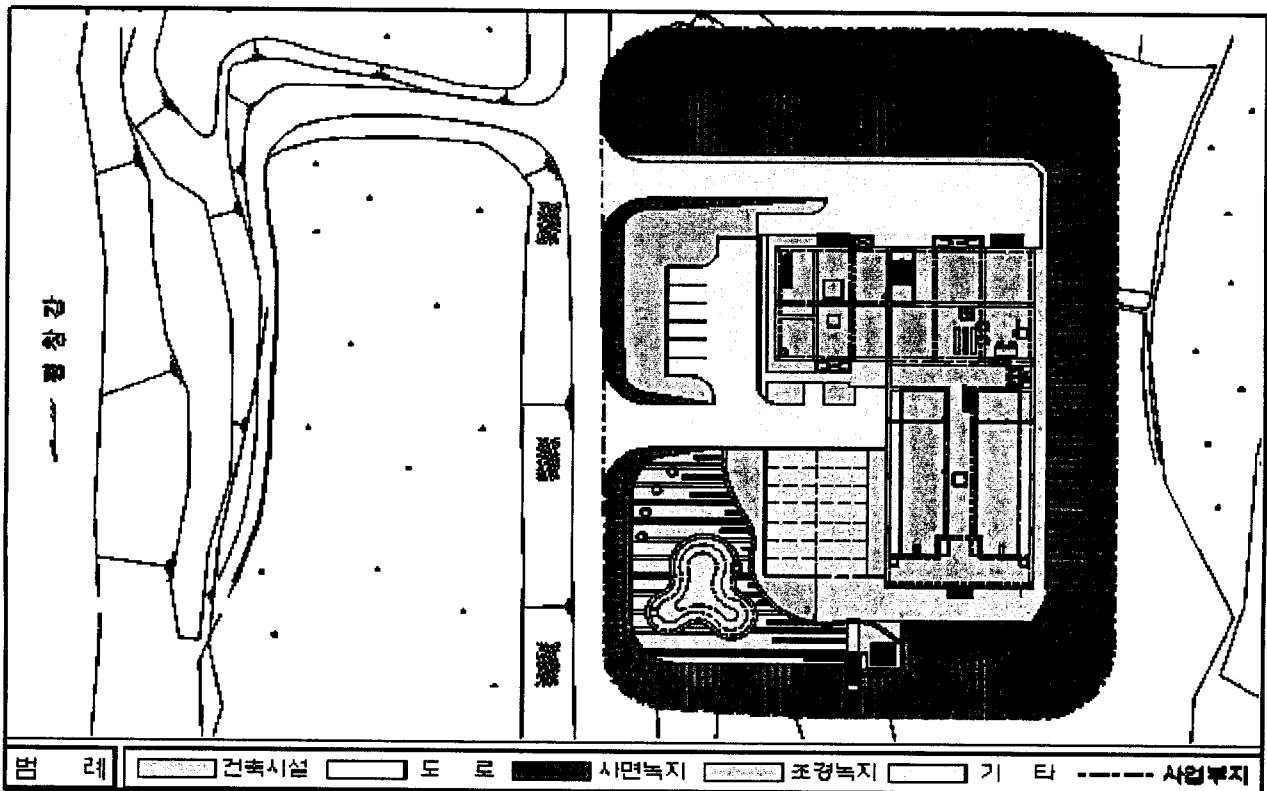
평창군 군관리계획변경(결정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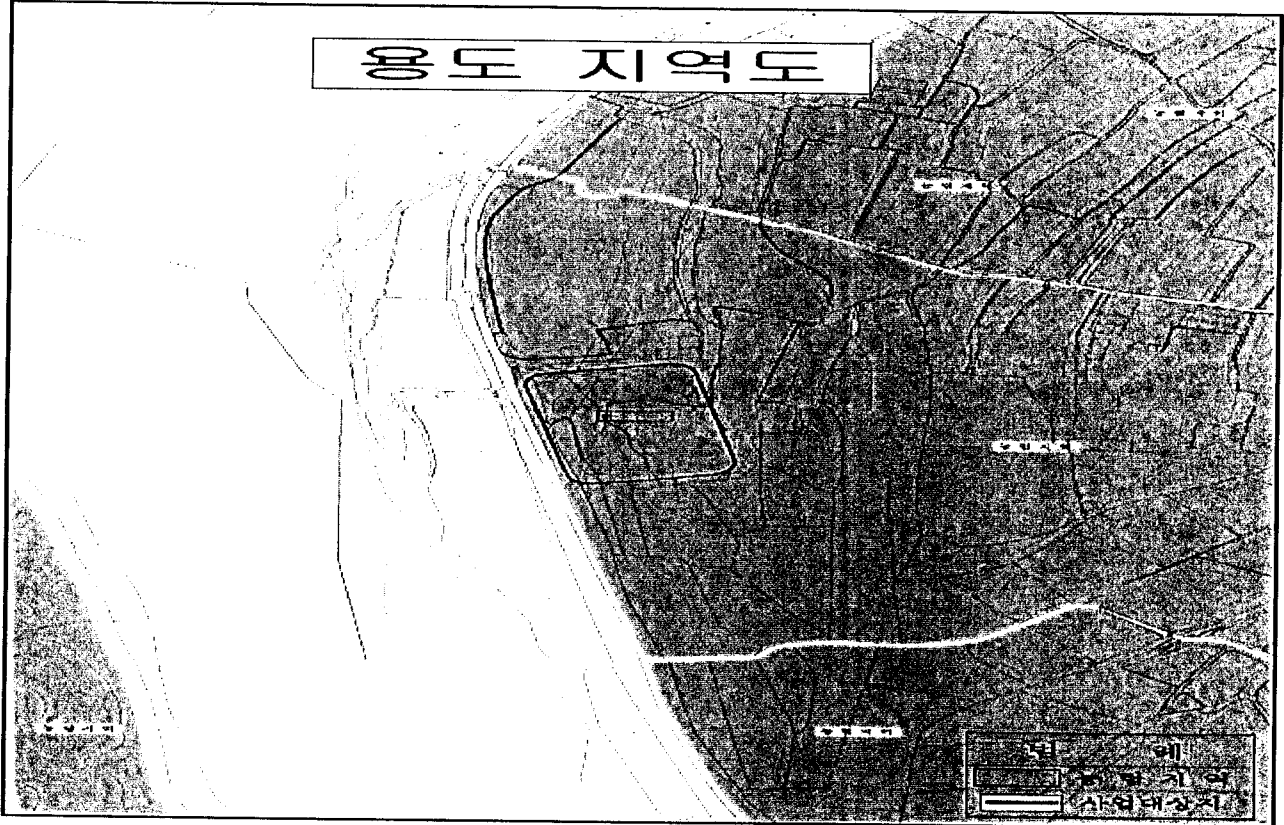
위 치 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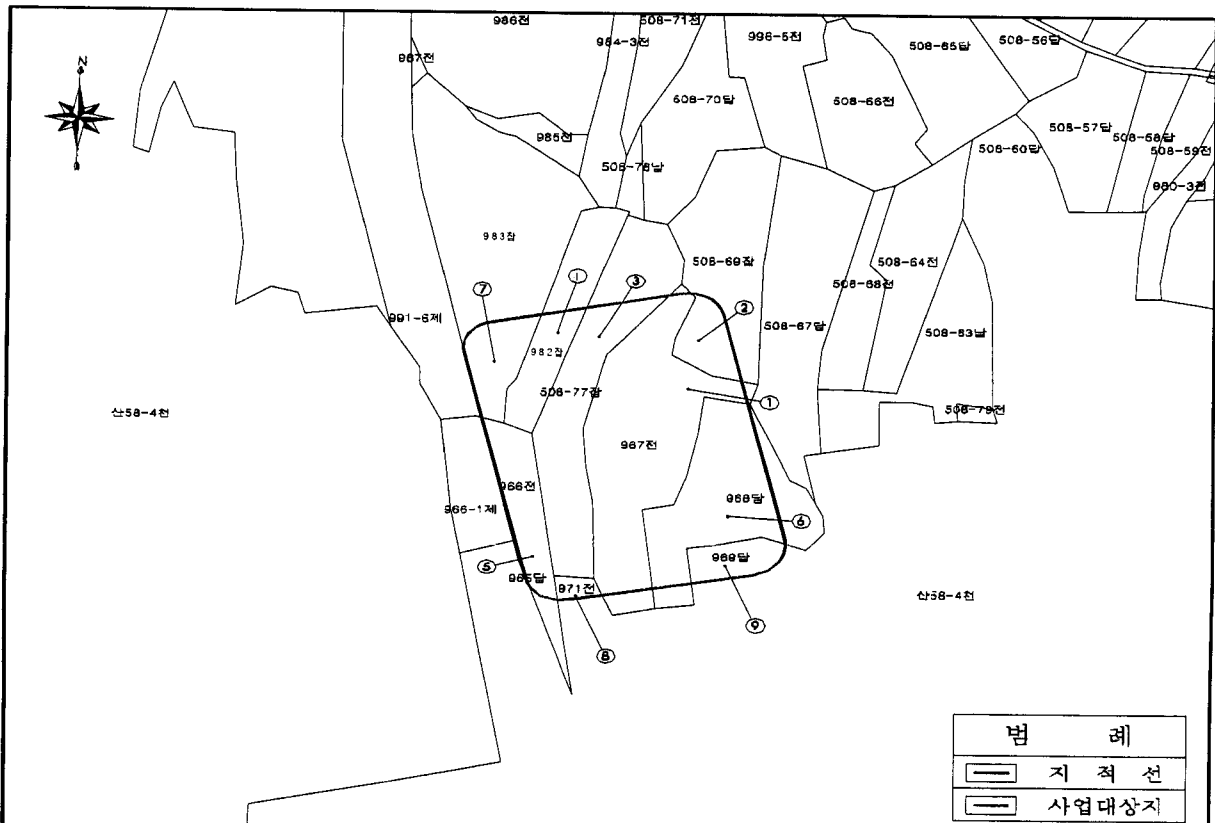
토지이용계획도



용도 지역도



경관 제수지리장 기면도



토지조서

구분	소재지	번지	지목	지적(㎡)	면적(㎡)	소유자	비고
1	평창군 평창읍 종부리	967	전	2,102.0	1,951	평창군	
2		508-69	잡	1,464.0	299	평창군	
3		508-77	잡	1,587.0	1,098	평창군	
4		982	잡	764.0	382	평창군	
5		966	전	641.0	498	평창군	
6		968	답	1,455.0	1,154	평창군	
7		983	잡	2,677.0	400	평창군	
8		971	전	1,931.0	75	평창군	
9		969	답	1,088.0	263	평창군	
합계	9필지			13,709	6,120		

지목별 총괄표

지 목	면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답	1,417	23.15	
전	2,524	41.25	
잡	2,179	35.60	
합계	6,120	100	

소유지 총괄표

구분	필지	전용면적(㎡)	구성비	비고
군유지	9	6,120	100%	
사유지	-	-	-	
계	9	6,120	100%	

관 련 법 규

【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】

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~ 3. 생략

4. "도시관리계획"이라 함은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의 개발·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·교통·환경·경관·안전·산업·정보통신·보건·후생·안보·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.

가. ~ 나. 생략

다.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

라. ~ 마. 생략

5. 생략

6. "기반시설"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가. ~ 바. 생략

사. 하수도·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

제28조 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 ① ~ ④생략

⑤건설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⑥ ~ ⑦ 생략